

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2차 변경 계획안

검토 보고서

1. 회부 경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4. 27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 일자 : 1999. 5. 28
- 다. 상정일자 : 1999. 5. 28 제6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안 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지침 기준에 의거 작성된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2차 변경 계획안의 취득재산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미탄 목욕탕 부지 토지 1,394㎡와 건물신축 354㎡임.

4. 검토 결과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

얻어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대상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회 취득대상은 토지면적은 1,394제곱미터와 건물 4억원(시가표준액)이 되는 점을 판단할 때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고

-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탄목욕탕 부지와 건물신축에 해당되는 취득대상으로서 현재 제1회 추경에 목욕탕 부지매입비 65,518천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,
- 관리계획상 부지매입비 추정금액은 28,577천 원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계상 금액은 65,518만 원으로서 차액 27,000천 원은 공시지가 적용과 감정평가사 산출에 따른 차액인 것으로 나타났음.